

# 2021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주요 수정사항

- 2021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주요 수정사항은 자료집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- 수정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 「2021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자료집」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수정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)

## ○ 「2021년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」 수정사항

수정일자	구분	변경 전	변경 후
2020.3.19.	P85 B15. 직원의 급여(보수)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	<p>&lt;평가내용 수정&gt;</p> <p><b>B15. 직원의 급여(보수)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</b> [보건복지부 권고기준 준수 여부(규정의 급여 포함, 법인수당 제외)]</p> <p>① 직원의 급여 수준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이상 지급하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70% <b>이상</b>이다.</p> <p>③ 직원의 급여수준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<b>이하</b>로 지급하고 있다.</p>	<p><b>B15. 직원의 급여(보수)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</b> [보건복지부 권고기준 준수 여부(규정의 급여 포함, 법인수당 제외)]</p> <p>① 직원의 급여 수준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이상 지급하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70% <b>초과</b>이다.</p> <p>③ 직원의 급여수준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<b>미만</b>으로 지급하고 있다.</p>
2020.3.19.	P87 B16.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노력(미배점)	<p>&lt;평가내용 수정&gt;</p> <p><b>B16.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노력(미배점)</b> [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기본사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 지원]</p> <p>①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인원(가형 18명 <b>이상</b>, 나형 15명 <b>이상</b>, 다형 10명 <b>이상</b>)을 지원하고 있다.</p> <p>[노인복지관에 적절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]</p> <p>③ 인건비 및 운영비 가형 12억원, 나형 7억5천만원, 다형 5억5천만원 <b>이하</b>를 지원하고 있다.</p>	<p><b>B16.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노력(미배점)</b> [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기본사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 지원]</p> <p>①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인원(가형 18명 <b>초과</b>, 나형 15명 <b>초과</b>, 다형 10명 <b>초과</b>)을 지원하고 있다.</p> <p>[노인복지관에 적절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]</p> <p>③ 인건비 및 운영비 가형 12억원, 나형 7억5천만원, 다형 5억5천만원 <b>미만</b>을 지원하고 있다.</p>
2020.3.19.	P109 D3. 고충처리	<p>※ <b>참고</b></p> <p>- 3년간 고충접수가 없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이용자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근거를 확인하여 인정</p>	<p>&lt;인정항목 추가&gt;</p> <p>※ <b>참고</b></p> <p>- 3년간 고충접수가 없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이용자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근거가 <b>확인될 경우 ②, ④ 항목 인정</b></p>

○ 「2021년도 노인복지관 평가 주요지침」 수정사항

수정일자	구분		변경 전	변경 후
2020.3.19.	P40	직원개념 정의	<b>1. 직원의 범위</b> ○ 월별 확보 직원 수 - 경상보조금, 자부담, 기타보조금 등 재원에 상관없이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(단, 정규직의 경우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포함, 일부 지표에서는 예외직원 있음)을 의미함	<b>&lt;직원개념정의 수정&gt;</b> <b>1. 직원의 범위</b> ○ 월별 확보 직원 수 - B5, B6, B7, E1 : 경상보조금, 자부담, 기타보조금 등 재원에 상관없이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(단, 정규직의 경우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포함, 일부 지표에서는 예외직원 있음)을 의미함 - 별도로 직원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지표의 직원은 재원, 계약 기간, 근무시간 등 상관없이 모든 직원을 의미함

○ 「2018년도 평가지표 대비 2021년도 평가지표 비교표」 수정사항

수정일자	구분		변경 전	변경 후
2020.3.19.	P20	B1. 사업비 비율	<b>&lt;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변경&gt;</b> B1. 사업비 비율 -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변경 · (기존) 유형별, 정규분포 → (변경) 전국, 중위값 - 경상보조금 정의에서 제외대상 추가 · (기존) 기능보강사업비 제외 → (변경) 시도 및 시군구의 기타보조금	<b>&lt;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변경&gt;</b> -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변경 · (기존) 유형별, 정규분포 → (변경) 전국, 중위값 - 경상보조금 정의에서 제외대상 추가 · (기존) 기능보강사업비 → (변경) 경상보조금 중 기능보강사업비, 기타보조금, 결산보조금 세입결산 금액에서 반환금 제외, 시도 및 시군구의 기타보조금 제외
2020.3.19.	P21	B3. 회계의 투명성	<b>&lt;신규항목 추가&gt; 대상기간 : 2020.1.1.~12.31.</b> B3-④ 후원금(품) 사용 및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. -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개 또는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게시 - 지자체직영시설은 해당항목 점수 부여	<b>&lt;신규항목 추가&gt; 대상기간 : 2020.1.1.~12.31.</b> B3-④ 후원금(품) 사용 및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. -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개 또는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게시, 운영위원회 보고 - 지자체직영시설은 해당항목 점수 부여

수정일자	구분		변경 전	변경 후
2020.3.19.	P23	B8. 직원채용의 공정성	<p>&lt;신규항목 추가&gt; 대상기간 : 2020.1.1.~12.31.            B8-② 인사위원회 또는 면접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다.            - 외부위원 구성 시 <b>동일 법인의 직원</b> 제외</p>	<p>&lt;신규항목 추가&gt; 대상기간 : 2020.1.1.~12.31.            B8-② 인사위원회 또는 면접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다.            → 외부위원 구성 시 <b>시설직원, 동일 법인 관계자</b> 제외</p>
			<p>&lt;인정범위 수정&gt;            B8-⑤ 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, 채점 등의 관련근거가 보관되어 있다.            - 범죄이력조회 범위 확대 : <b>노인학대 신고의무 포함</b></p>	<p>&lt;인정범위 수정&gt;            B8-⑤ 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, 채점 등의 관련근거가 보관되어 있다.            - 범죄이력조회 범위 확대 : <b>노인학대 포함(2020년부터)</b></p>
2020.3.19.	P27	E1. 외부자원개발	<p>E1-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산정한다.            - 월별확보직원수 기준 변경 : 경상보조금, 자부담, 기타보조금 등 재원에 상관없이 주40시간 근무하고,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직원 (단, 정규직의 경우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포함)            - 적용직원 명시 : 사회복지사, 간호사, 특수교사, 영양사에 한하며, 사업의 전담인력(기타보조금 사업의 담당자)은 제외함            -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변경            · (기존) 유형별, 정규분포 → (변경) 전국, 중위값</p>	<p><b>&lt;신규항목 추가 (대상기간:2020.1.1.~12.31.)&gt;</b>            E1-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산정한다.            - 월별확보직원수 기준 : 경상보조금, 자부담, 기타보조금 등 재원에 상관없이 주40시간 이상 근무하고,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직원 (단, 정규직은 주40시간 미만 근무자도 포함)            - 사회복지사, 간호사, 특수교사, 영양사, <b>물리치료사</b>에 한하며, 사업의 전담인력(기타보조사업 담당)은 제외            -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: 전국, 중위값</p>